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함(제1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 주류 등의 제조자 등이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

II. 검토의견

- 수리를 요하는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안 제38조제1항제3호)

개정안은 종전의 주류 등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에 대한 검정제를 제조·저장용 용기 신고제도로 규제를 완화하고(안 제28조),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그런데, 현행 검정제도와 달리 안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의무는 주류 등 제조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인데, 안 제38조제1항제3호는 안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한 “용기를 사용”한 판매업자 등도 처벌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안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신고 외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간주되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안 제28조제1항 후단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주류 등 제조·보관용 용기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

안 제38조제1항제3호의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라는 표현은 과태료 부과 전제가 되는 의무부과 규정인 안 제28조제1항 전단의 “신고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대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행위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반드시 행정청이 ‘수리’를 하여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도 부정확한 표현인바,¹⁾²⁾ 안 제38조

1)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현행 입법례도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2호의 1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또는 벌칙 부과요건에 “수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음.(예를 들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제3항제9호, 「관세법」 제269조제2항 등)

제1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주류 등 제조자의 제조·저장용 용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8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u>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 -----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u>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u> ----- ----- ----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